

사랑과 신뢰, 번영과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6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정(안)] 생명안전기본법	4
2. [제정(안)]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	9
□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자원에 관한 조례	12
2. [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15
□ 국회입법	
1. [이슈와 논점]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18
2. [NARS info]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	25
□ 국외동향 및 시책	
◇ [최신외국정책정보]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	28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도시형 주거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임대 규제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애틀랜타] 단기 임대 규제 및 과세 조례	35
2. [캐나다 토론토] 단기 임대의 등록 및 허가 조례	42
3. [호주 프랭크스톤] 단기 임대 숙박에 관한 조례	60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5건 (광역시·도 3건 / 기초 시·군·구 2건)	67
□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의원발의 2건 (제정조례안 2건)	10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정(안)] 생명안전기본법

[제안 2025. 3. 10.] [의안번호 제2208779호, 2026. 5. 7.,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 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안전 관련 조례)
-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안전영향평가,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피해자 권리보장, 안전약자 보호, 독립조사기구,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임.
 -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존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들이 개별 사고 유형과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사람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음. 즉, 이 법안은 특정 재난유형이나 특정 안전정책 분야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아니라, 향후 안전에 관한 모든 법령·조례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조례 체계는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군중안전, 시설안전, 환경안전 등 개별 분야별로 분산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예컨대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각각 특정 위험영역 또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권 보장·피해자 권리·안전약자 보호·안전영향평가 등 안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번 법안은 개별 안전조례를 단순히 추가·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 안전 관련 자치법규 전반의 체계와 입법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첫째, 안전 관련 조례 전반에 적용되는 ‘안전권 중심의 기본원칙’ 정립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법안은 모든 사람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안전권’을 명시적 권리 개념으로 선언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법령·조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안은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들은 대체로 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 있어, 주민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권리 중심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안전조례의 목적조항이나 기본이념 규정에 안전권 보장 원칙, 차별 없는 보호 원칙, 안전약자 우선보호 원칙 등을 반영하는 방향의 입법 준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안전 관련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정보접근 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법령·조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정보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계획·지침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안전 관련 조례들은 주민 의견수렴이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주로 일반적인 협력·홍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안전정책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사항까지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음. 특히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도시공간 안전설계, 산업재해 예방,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안전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주민·전문가·피해자 등의 참여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체, 안전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안전약자 보호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안은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저소득층·이주민·다문화가족·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등을 ‘안전약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계획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안전 관련 조례들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규정을 일부 두고는 있으나, 안전약자의 유형별 특성과 위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구성은 아닌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도시·농촌·접경지역이 혼재된 광역지자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고령층·장애인·이주민·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대피체계,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이동약자 지원체계,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피해자 권리보장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법안은 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조사참여권, 재발방지 참여권, 심리·의료·주거·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이후의 기억·추모·공동체 회복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들은 재난수습이나 복구지원 중심의 구조가 강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이나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많지 않음. 특히 사회재난이나 군중사고 등은 사고 자체의 피해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공동체 갈등조정, 추모사업,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보다 적극적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안은 피해자 의견청취 및 참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조례에서도 피해자 참여형 제도의 규정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자치입법 단계의 안전성 검토 강화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조례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사업 등에 대하여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재난관리 중심 접근을 넘어,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 제도 설계 자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 체계에서는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적·통합적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분야별 사전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에는 도시개발, 교통체계, 축제·행사, 데이터·플랫폼, 산업단지 조성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안전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 단계에서도 기존의 비용추계·성별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방식의 안전영향 검토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여섯째, 안전기준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분석체계 구축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안전수준 진단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안전정책은 교통·산업·생활·행사·시설안전 등 개별 분야 중심으로 분산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여, 안전기준이나 위험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도 차원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시·군별 안전취약성 분석, 안전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 등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조례상 실태조사·안전점검 규정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곱째, 독립적 조사체계 및 정책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입법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법안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 수준의 독립조사기구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데에는 법적·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형 사회재난이나 군중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 외부전문가 참여, 조사결과 공개 및 정책개선 권고 등의 절차를 제도화 하려는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단순한 사고수습을 넘어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연계하는 정책 환류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생명안전기본법안」은 기존의 개별 재난·안전 정책을 넘어, 안전권 보장, 안전약자 보호, 피해자 권리, 안전영향평가, 독립조사, 공동체 회복 등 안전 전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와 정책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기본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현재 다양한 개별 안전조례들이 분야별 대응체계로 기능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 자치입법 전반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과 통합적 안전정책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상위법 제정

시에는 ① 안전권 중심의 조례 체계 정비, ② 주민참여 및 안전정보 공개체계 강화, ③ 안전약자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④ 피해자 권리보장 및 공동체 회복 관련 제도 보완, ⑤ 안전영향 분석·평가 체계 도입 검토, ⑥ 안전기준 및 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강화, ⑦ 독립적 조사 및 정책 환류체계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 관련 조례 전반의 입법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정(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 2026. 4. 22.] [의안번호 제2218535호, 2026. 4. 22.,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가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 이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사진 분야 최초의 기본법 성격의 법안임.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진이 예술·문화·산업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이 사진기술 및 장비 발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창의적 사진작품

개발과 인재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이 법안은 단순한 예술지원 차원을 넘어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함께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의미가 있음.

○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전시공간 조성·운영, 전시·행사 개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위탁,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진 진흥 조례의 형태는 갖추고 있음. 다만 현행 조례는 비교적 간결한 사업조례 구조를 취하고 있어, 법률안에서 제시한 중장기 계획체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상위법 시행 시에는 별도의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조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중장기 계획체계 및 실태조사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법률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를 두고 있으며, 사진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는 개별 사업 추진 중심 구조를 취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사진진흥 정책 방향이나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특히 최근 사진 분야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유통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 프리랜서 중심 창작환경 변화 등으로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도내 사진 창작환경, 산업 현황, 전시·교육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둘째,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기본계획의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디지털 기반 사진산업 지원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최근 사진 분야는 생성형 AI 이미지 기술, 디지털 편집, 온라인 플랫폼 유통 등과 결합되면서 단순 예술영역을 넘어 콘텐츠산업의 성격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청년 사진작가 육성, 디지털 사진기술 교육, 사진콘텐츠 산업화 지원 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의 검토가 가능함. 법률안은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부착,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는 창작·전시·행사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이나 권리보호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진의 무단 복제·재가공·온라인 유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권리분쟁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사진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권리보호 홍보, 법률지원 연계사업 등을 조례상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

○ 넷째, 사진자료의 수집·보존 기능을 지역 기록문화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법률안은 국가가 사진문화 보존과 사진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진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는 전시·행사·창작 지원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지역 사진자료의 기록·아카이빙 기능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진은 단순 예술작품을 넘어 지역의 역사·사회·생활문화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경기지역 역사사진, 생활문화 기록사진 등에 대한 수집·보존·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사진진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요컨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단순 예술지원 차원을 넘어, 사진문화와 사진산업 전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체계, 계획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기본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미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어 별도의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가 비교적 간결한 사업조례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법 시행 시에는 ① 중장기 계획 및 실태조사 체계 보완, ②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반 사진산업 지원 강화, ③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확대, ④ 사진자료의 수집·보존 및 지역 기록문화 정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정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76호, 2026. 4. 8., 제정]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저출생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임신·출산 과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입장료 등 감면(안 제5조)
- 마. 임신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운영(안 제6조)
-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생 심화 상황에서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음. 특히 기존의 모자보건 정책이 의료·건강관리·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과 달리, 임신부를 사회적으로 우대·배려하여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생활밀착형 편의 제공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현행 경기도 조례 중 임신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는 임신부 건강관리,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사업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임신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신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다만 현행 경기도 조례 체계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공공서비스 우대원칙을 종합적으로 선언·체계화하는 규범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는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 정책을 단순 보건지원 차원을 넘어 사회적 예우 및 생활친화 행정의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함.

- 첫째, 임산부 정책의 규율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특히 목적조항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취를 명시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는 보건·복지 지원사업 중심 구조로 되어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공서비스 우대원칙을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경기도 조례 정비 시에는 의료·보건 지원 중심 체계와 별도로,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배려 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적 성격의 조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시설 이용 우대 및 감면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사용료·관람료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임산부의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감면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감면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 역시 향후 유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보다는 개별 공공시설 조례와의 정합성 확보, 감면을·적용범위·동반자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정비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임산부에 대한 행정서비스 우선지원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민원실 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도 임산부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심사보고서에서는 기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창구 운영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추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음. 경기도 역시 민원실,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임산부 우선안내·우선민원·휴게시설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넷째, 교육·홍보 및 사회인식 개선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단순한 현금성·의료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병행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현행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도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책의 중심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있음. 따라서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공공기관 임산부 친화환경 조성, 민간 참여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요컨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모자보건·출산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공서비스 우대원칙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현재도 모자보건 및 이동 편의 관련 조례를 통해 일정 부분 정책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임산부 예우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는 ① 임산부 친화 행정 및 사회적 예우 원칙의 체계화, ② 공공시설 이용 우대 및 감면제도의 정합성 확보, ③ 민원·행정서비스 우선지원 체계 마련, ④ 교육·홍보 중심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사업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현행 조례의 보완 또는 별도 기본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6. 4. 2.] [울산광역시조례 제3256호, 2026. 4. 2.,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동아리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동아리활동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동아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학생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주요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학생의 진로·흥미·적성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한 포용성과 시민성 함양까지 동아리활동의 정책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또한 울산광역시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리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주요 활동으로서 학생의 진로역량 및 전공 관련 전문적 소양 함양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자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학교문화 조성 등과 관련된 개별 정책과 사업은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자체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조화한 조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과 미래역량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례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적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 첫째, 학생 동아리활동의 정책적 위상 및 교육적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는 동아리활동을 단순 자율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흥미·적성과 연계된 교육활동으로 정의하면서, 학술·문화·여가·봉사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학생 동아리활동을 비교과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민주시민교육, 공동체교육 및 미래역량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정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둘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기본방향,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기록 및 사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단순 행사성 사업 지원이 아니라 학생 동아리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 단위 또는 개별 사업 중심의 동아리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학생 동아리활동을 단년도 사업 중심이 아니라 교육정책 차원의 계획에 기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학생 참여 및 학교현장 의견 반영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는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아리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학생 동아리활동의 특성상 실제 활동 주체인 학생의 자율성과 참여가 정책 실효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생 중심 교육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학생자치회 연계, 학생 의견수렴 절차, 우수 동아리 사례 공유 등 참여 기반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학생 동아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 기반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는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을 통해 학교 내외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단순 활동 지원을 넘어 학생 활동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최근 학생활동의 다양화 및 학교 밖 연계 프로그램 확대 흐름을 고려할 때, 활동 이력의 관리와 안전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다만 학생생활기록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가 가능성 등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기존 학교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형태의 기록·관리 체계 마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는 학생동아리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동아리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자문기구로 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문기구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입법기술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경기도 또한 지역 규모와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대학·공공기관·청소년기관·문화예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연계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는 학생 동아리활동을 단순한 자율활동 차원을 넘어 학생의 창의성·시민성·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자치 및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책 기반은 일부 갖추고 있으나, 학생 동아리활동 자체를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구조화한 조례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는 ① 학생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기능 및 정책적 위상 명확화, ②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 체계 마련, ③ 학생 참여 기반 강화, ④ 활동 기록·관리 체계 정비, 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별도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77호 (2026. 03. 03.)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향후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I. 최근 광역 행정구역 통합 논의

최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에서도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¹⁾ 그리고 2026년 3월 1일 전남·광주 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7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통합특별시²⁾라는 광역자치단체 유형이 만들어졌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226개(75시, 82군, 69구)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의 통과로 광역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1통합특별시, 5광역시, 1특별자치시, 5도, 3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II.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22대 국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입법 동향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 5건, 충남·대전 통합법안 2건, 대구·경북 통합법안 2건이 발의되었다.

1) 부산·경남 간의 통합은 2026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통합 단체장 선거를 통해 완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8년 통합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2026.1.28.).
 2) 통합특별시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표 1 제22대 국회,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현황

구분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				
	광주전남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전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정준호의원 (25.12.24.)	한병도의원 (26.2.3.)	옹혜인의원 (26.2.5.)	서왕진의원 (26.2.5.)	신정훈의원 (26.2.6.)
본칙조문	3조	386조	269조	381조	18조

구분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충남대전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행정 통합특별법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한병도의원 (26.2.3.)	성일종의원 (25.10.2.)	임미애의원 (26.2.2.)	구자근의원 (26.1.30.)
본칙조문	314조	296조	323조	335조

이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12일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대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대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대안)」이 마련되었다.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할 때 전체적으로 구성의 통일성을 주었고 제1편과 제2편의 조문은 유사하다. 다만, 제3편의 산업 및 경제특례 부분에서 지역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³⁾

대안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1일에 통과되었고, 동시에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특례 부여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그러나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추가 논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⁴⁾

이번 통합이 결정된 전남·광주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고,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올해 7월 1일 출범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사용한다.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제1편 총칙, 제2편 통합특별시 설치·운영(특별시 설치, 지원위원회 및 권한이양, 지방의회, 자치행정, 자치재정,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감사), 제3편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도시개발, 산업활성화)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특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도 현지성 있고 지역경제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자치조직 및 인사 운영 특례를 부여했으며, 부시장 정원은 4명으로 확대했다.⁵⁾ 광역시·도 통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군·구는 그대로 존치되며, 시·군과 자치구 간의 자치역량이 불균형한 문제는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치재정 측면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특례 등을 부여했다.⁶⁾

지방의회 관련 내용으로는 의회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정수 1/2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투표 특례를 두었다. 자치감사 확대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3편에 도시의 개발 및 기반조성 관련 산업·경제·사회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지구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특례 등을 두었다. 그 외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지역역세권 활성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특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기본사회 실현 추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저출생 대응기금 설치,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의료원 운영 특례,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등이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처리가 보류되었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5)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은 임명 전에 시의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6) 앞의 <표 1>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재정지원 관련 규정을 보면, 국세의 일부 이전, 지방세 감면 및 세율 조정 권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교부, 시·군 조정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 농어촌기본소득, 저출생 기금(출생기본소득), 광역통합교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의 신설 내용에 담겨 있으며, 일부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복권 발행 특례 등도 규정되어 있다.

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문구성	본칙 조문 408조, 부칙 조문 16조
통합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사무이양	중앙행정기관 권한 단계적 이양,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기초지자체 자치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등
자치행정	부시장 4명 확대 등 자치조직 특례,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등 인사운영 특례, 시·군·구 지위 및 권한 특례 등
자치재정	예산 지원 및 특례,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채 발행 특례,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공유재산 관리 특례, 세율 조정 특례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특례, 의회 예산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노력,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부시장 등 인사청문회 등
주민참여	시민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주민투표 특례
지역특례	제3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96조~149조) 제2장 산업활성화 (150조~400조)

III. 향후 과제

1. 국가-통합특별시-시·군·구 간의 기능 재설계

통합특별시에 이양되는 국가 사무와 함께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의 자치기능을 행정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 특별시·광역시 산하에 자치구를 두고, 도·특별자치도 산하에는 시·군을 두고 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는 형식을 취했다. 문제는 시·군과 자치구 간에는 사무와 재정권한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14개 분야 42개 업무에 이른다.⁷⁾ 또한, 11개 지방세 세목 중 광역시는 9개를, 소관 자치구는 2개를 징수한다. 반면 광역도는 6개를, 소관 시·군은 5개를 징수한다.⁸⁾

따라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역량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7)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제2항 관련).

8) 광역시(9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자치구(2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이다. 반면, 도(6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시·군(5개)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이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령상으로 국가-통합특별시-시·군·구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이후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및 직접 교부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2. 집행부 견제 :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특별법 통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는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⁹⁾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의회의 지위와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¹⁰⁾¹¹⁾ 아울러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의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지원 인력의 증원 등 조직·인력 제도의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¹²⁾

한편, 행정통합에 따라 주민의 자치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주민참여 제도에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이 있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관할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주민의 직접 참여 요건과 비율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

광역시·도 통합 이후 현행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광역시, 광역도, 시·군, 자치구 간 지방세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통합특별시 소관 시·군·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데, 특별법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불교부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행정통합, 지역 균형발전인가? 특혜 쟁탈전인가?», 2026.2.10.

10) 행안위 소위 의결시(26.2.12.) 부대의견으로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11) '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 수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자 89명 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송진미,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이슈와 논점』 제19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12)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법안」이 5개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자치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만약 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정교부금과의 역할 정립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에 관한 부분이 미흡하다. 지난 1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¹³⁾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현재 통과한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세원 발굴, 조례를 통한 지방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광역 간 통합 절차 및 특례 부여 법적 기준 마련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으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및 행정구역 변경 절차, 각종 특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¹⁴⁾ 반면,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절차와 주요 특례 부여 기준 등을 정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려는 모든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즉 조직·인사·재정 등 큰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경제·사회 특례는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어떤 분야와 형태로 특례를 부여할지에 대한 원칙은 법령에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5. 주민의사 수렴 등 속의민주주의 절차 보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의견수렴 방법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2004년 7월 「주민투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시·군 간 통합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역들이 있다.¹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광역 단위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라도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¹⁶⁾

이번 통합특별시 논의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속의민주주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후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역들을 위해서라도 속의민주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마치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지역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통합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향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에 있는 각종 특례가 국가 차원의 관련 정책과 정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고, 통합하지 않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통합특별시장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따른 견제장치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 법 개정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제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균형 발전정책에 행정통합까지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없는 충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해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지방행정계층, 관할구역, 국가-광역-기초간 기능 배분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1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2026.1.16.

14) 예를 들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제44조), 시·군·구의 통합절차(제45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제46조), 통합 지자체의 명칭(제47조), 통합 지자체의 각종 특례 규정(제48조~제57조)이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대상은 기초단위인 시·군·구로 한정하였다(법 제2조제17호).

15)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2005년),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2005년, 2012년),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2013년)가 있다.

16) 하혜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 미래를 위한 방향과 전략」, 『이슈와 논점』 제22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99호 (2026. 04. 27.)

Overview

물티슈는 주로 일회 세정용 제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실제 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 후 변기나 하수도로 배출될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하수관로 막힘, 펌프 및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증가, 미세플라스틱 유출 등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의 판매 금지를 결정하며, 우리도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생산자책임, 표시·광고 규율, 단계적 규제 로드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티슈 환경 문제의 핵심: 종이보다 플라스틱

"물티슈는 편리함 이면에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안고 있음"

변기에 버려질 경우

하수관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기름때와 결합해 막힘과 설비 손상을 초래

자연 유출 시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이 되어 하천·해양 생태계에 부담

공공 하수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증가시킴

문제점

시장에서는 '순면', '천연', '플러셔블'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시가 사용되지만, 실제 환경성이나 변기 투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미흡함

개선방안

물티슈는 단순 위생용품이 아니라, 생산·유통·폐기 전 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1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볼 필요가 있음



영국과 한국의 물티슈 규제 비교



영국



한국

하수 인프라·해양환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규제 인식

위생용품 중심 관리, 환경규제는 제한적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를 직접 규제



법적 분류

'화장품'·'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

판매 금지 중심의 원천 차단



규제 방식

1회용품 규제 대상 제외

생산·유통 단계 규제 강화



생산자책임

환경복구 비용의 생산자 부담 미흡

규제 강화 추세



표시·광고

'친환경'·'플러셔블' 표시 검증 미흡

사후처리 → 사전예방 전환



정책 방향

제도 공백 해소 필요

사회적 비용 | 하수관 유지관리와 긴급 준설, 펌프 고장 복구 등 실질적 비용 | 물티슈 생산자가 부담의 폐기물무담금 등

환경규제 어려움

플라스틱 합성섬유 제품임에도 사용 억제, 유통 제한, 재활 기준 등 환경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사회적 비용과 실질적 환경비용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실질적 환경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음

그린워싱 우려

표시·광고 측면에서도 '친환경' 또는 '변기에 버려도 되는 제품'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검증·통제하는 기준이 부족

영국은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 금지로 전환

물티슈 문제를 생활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하수 인프라와 해양환경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함

시사점과 개선방안



「자원재활용법」 개정

▶ 물티슈를 규제 대상 1회용품 또는 관리대상 1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생산자책임 규율에 포함

▶ 물티슈를 폐기물부담금 등 생산자책임 규율에 포함하여 하수도 복구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산 단계에서 반영해야 함

시험기준 및 인증절차 마련

▶ 「화학물질, 체계 내 표시·광고 규제를 정비하여 '친환경', '천연', '물 분해성' 등의 표현에 대해 객관적 시험기준과 인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로드맵 및 제한적 예외 기준 설계

▶ 표시개선 - 생산자책임 강화 - 플라스틱 함량 규제 - 판매 제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설계하되, 의료·돌봄 등 필수 용도에는 제한적 예외와 별도 회수·처리 기준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내용
과
연계
법
률
제
정
내
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발의, 제2216264호

2026년 1월 22일 발의된 안으로, 물티슈처럼 한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을 거름에 활용 위해 우려 저감 조치를 신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재활·구조 개선 기준, 환경 위해 방지 표시사항 정비,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김기용의원 등 10인 발의, 제2216424호

2026년 1월 29일 발의된 안으로, 1회용품의 정액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시키고 이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넣으며,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 용이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국외동향 및 시책

◇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제29호] (2026. 4. 27.)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미수급 해결을 위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선제적 사회보장(Solidaritéà la source)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실시간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자 소득 신고 사전 기입제와 현지 밀착형 발굴 실행인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 중임. 본 보고서는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 혁신과 인적 기반의 현장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복지 미수급 해소 전략과 추진 현황을 소개함.

I. 사회보장급여 미수급 현황 및 사각지대 발생 원인

- 유럽 주요국의 사회보장급여 미수급률은 평균 30%를 웃도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현안임. 프랑스 또한 주요 사회보장급여 항목에서 유사한 미수급(non-recours) 현상이 관찰됨.¹⁾
- 수급권 포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모델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임.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제 위기 시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소외 계층 지원 비용을 증가시켜 공공재정에 부담을 초래함.²⁾
- 프랑스 사회연대부 및 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항목별 미수급 통계에 따르면, 생계급여(RSA)³⁾는 2018년 기준 수급 자격 가구의 약 34%가 미수급 상태이며, 특히 노령기초 연금은 독거노인 가구의 미수급률이 50%에 달하는 등 고립 가구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임.

1)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2). Le non-recours aux prestations sociales en France et en Europe.

2)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14). Intervention de Jean-Christophe Combe lors du colloque DREES sur le non-recours aux prestations sociales en France et en Europe.

3)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부조 제도임.

프랑스 주요 사회보장급여 미수급 현황

구분	노령기초연금	생계급여	실업급여
미수급률	전체 고령자 1인 가구의 50% (2016년 기준)	34% (2018년 기준)	30% (2018~2019년 기준)
미수급 규모	32만 명	매분기 60만 가구	54만 명
연간 미지급액	10억 유로	30억 유로	N.A

자료: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2). Le non-recours aux prestations sociales en France et en Europe.

- 미수급 발생 원인 1위는 정보 부족(37%)에 따른 제도 인지도 저조로 파악됨. 생계 급여의 경우 명칭 인지도는 95%로 높으나 수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39%에 불과하며, 특히 노령기초연금은 그 비율이 19%에 그쳐 정보 격차가 권리 행사의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음.⁴⁾
- 이와 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22%)에 따른 부담감과 급여 과다지급 시 발생하는 사후 부당이득 환수(17%)에 대한 우려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여기에 신청 과정에서의 사회적 낙인 및 디지털 격차에 따른 접근성 제약은 잠재적 수급자가 자격이 있음에도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함.⁵⁾
- 이에 프랑스 정부는 복지 미수급 대응을 범정부 빈곤 해소 전략인 ‘사회연대협약’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사전 작성하는 ‘자동 사전 기입제(préremplissage)’와 현장 밀착형 발굴 체계인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erritoires zéro non-recours, TZNR)’ 사업을 병행하며, 선제적 사회보장(Solidarité à la source, SAS)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⁶⁾

II.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자동화: 사전 기입제 구축과 운영

1. 추진 배경 및 수혜자 데이터 관리 체계

-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복지 미수급을 해소하고, 수혜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4)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13). Non-recours aux prestations sociales : le manque d'information en tête des motifs selon les Français.
 5)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14). Intervention de Jean-Christophe Combe lors du colloque DREES sur le non-recours aux prestations sociales en France et en Europe
 6)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3.1.30). Intervention de Jean-Christophe Combe lors du comité de coordination pour l'accès aux droits.

선제적 사회보장(SAS) 모델을 구축함. 이는 국가가 이미 보유한 수급자의 소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정보 일회 제공 원칙을 기반으로 함.⁷⁾

- 2013년 3월 「근로자 사회보장신고(DSN)시행령」⁸⁾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 사회보장신고(DSN)⁹⁾를 기점으로, 지난 10여 년간 행정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사회보장 데이터의 대부분이 전산화됨. 현재 소득 데이터는 발생 원천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자 사회보장신고(DSN), ▲대체소득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PASRAU)¹⁰⁾, ▲자영업 및 자산소득은 세무 신고 경로로 수집됨. 이들 데이터는 범기관적 공통 표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함.
 - DSN, PASRAU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월간소득 관리체계(DRM)¹¹⁾로 통합 관리되어 가구 소득 파악 및 급여 산정에 활용됨. 최종적으로 ‘국가공통 사회보장수혜자 명부(RNCPS)’¹²⁾를 통해 수혜 데이터를 검증함으로써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현대화를 도모함.
 - 2024년 1월,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 조정 범부처 추진단(Mids)’을 신설함. 또한, ‘사회보장정보 간소화 및 품질위원회(CSQ)’를 통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함.¹³⁾
- ### 2. 사회보장용 순소득(MNS) 개념
- ‘사회보장용 순소득(Montant net social, MNS)’은 임금, 수당 등 모든 종류의 세전 총 소득에서 법정 및 단체 협약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기여금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함. 이 항목은 2023년 7월부터 급여 명세서에 도입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 산정을 위한 표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¹⁴⁾

7)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2.14). Catherine Vautrin confirme le lancement de la solidarité à la source le 1er mars 2025.
 8) Décret n° 2013-266 du 28 mars 2013 relatif à la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9) DSN(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은 고용주가 매월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로자별 고용·소득 데이터를 통합 전송하는 실시간 행정 데이터 신고 체계임.
 10) PASRAU(Préèment À la Source pour les Revenus Autres)는 연금, 실업급여 등 근로소득 외 소득 지급기관이 해당 내역을 통합 신고하는 시스템임.
 11) DRM(Dispositif de Ressources Mensuelles)은 DSN과 PASRAU를 통해 수집된 소득 정보를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며, 복지 급여액 자동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앙 데이터 허브임.
 12) RNCPS(Réertoire National Commun de la Protection Sociale)는 모든 사회보장 수혜자의 신원 정보와 실제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범기관적 공통 등록부임.
 13)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2.12.6). Données sociales et solidarité à la source. ;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6.2). Rapport annuel 2025 du CSQ.
 14)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3.12). Le montant net social : Plus facile, plus fiable et plus juste.

○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이나 농업인사회보장기구(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등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는 분기별 소득 신고서(DTR)¹⁵⁾ 작성 과정에서 수급자가 직접 소득을 계산하던 방식 대신 고용주나 기타소득 지급 기관이 산출한 MNS를 참고 지표로 활용함. 이를 통해 수급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로 인한 과다·미수급 위험을 방지함.

○ 2024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급여 명세서에 MNS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는 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 지급 명세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됨. 이에 따라 수급자는 2024년 2월부터 사회보장급여 갱신을 위한 소득 신고 시 명세서에 기재된 MNS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계산 절차 생략에 따른 미수급률 감소가 기대됨.¹⁶⁾

3. 사전 기입제

○ 가족수당기금(CAF)은 수급자가 순소득(MNS)을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DSN, PASRAU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서 소득란을 미리 채워주는 자동 사전 기입제로 전환함.¹⁷⁾

○ 소득 정보를 수급자 본인이 아닌 소득 발생처(고용주 및 기관)로부터 직접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고, 각 개인에게 정당한 권리(Juste droit)에 부합하는 정확한 급여 지급을 보장함.

○ 2022년 사전 기입제 도입 준비에 착수한 이후, 2024년 10월 5개 지역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470만 명, 생계급여 190만 명 등 총 660만 명의 가족수당기금(CAF)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소득 신고서(DTR) 자동 사전 기입을 전면 시행함. 수급자는 자동 기입된 소득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됨.¹⁸⁾

○ 적용 대상을 농업인사회보장기구(MSA) 가입자까지 확대하여 2025년 7월 근로장려금, 9월 생계급여 신청에 자동 사전기입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보장 행정의 자동화 개혁을 완수함.¹⁹⁾

15) DTR(Déclaration Trimestrielle de Ressources)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사회보장기관에 매 분기 제출하는 소득 신고서로, 급여액의 정확한 산정과 수급 자격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16)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6.26). Le montant net social.

17)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2025.1.15). Solidarité à la source : les déclarations trimestrielles de ressources préremplies gééralisées.

18)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2.14). Catherine Vautrin confirme le lancement de la solidarité à la source le 1er mars 2025.

19)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6.26). Le montant net social.

사회보장 자동 사전 기입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추진 단계 및 시기	추진 내용
기반 조성(2022~2024.2)	사업장 임금 명세서 내 사회보장용 순소득(MNS) 표기 의무화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시범 운영(2024.10)	5개 지역 가족수당기금(CAF) 수급자 대상 분기별 소득 신고서(DTR) 자동 사전 기입 테스트 및 시스템 최적화
전국 확대(2025.3~9)	- (3월) CAF 수급자 660만 명 대상 전국적 자동 사전 기입 전면 시행 - (7~9월) 농업인사회보장기구(MSA) 확대 적용 및 제도 정착

자료: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2.14). Catherine Vautrin confirme le lancement de la solidarité à la source le 1er mars 2025.

○ 사전 기입제의 도입 및 시범 운영 확대에 힘입어, 2024년 하반기에만 7만 건 이상의 사용자 오류 의심 신고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신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오류관리전담반 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오류 탐지 및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²⁰⁾

○ 2026년 범용 API 구축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기관이 발견한 데이터 오류 정보를 기업 급여 시스템 등 데이터가 생성되는 지점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즉각적인 수정을 유도함으로써, 데이터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 정보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임.²¹⁾

III.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및 수혜자 데이터 관리 체계

○ 사회보장급여 미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이 사업은 ‘장기실업 제로 지역(TZCLD)’²²⁾ 모델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됨.²³⁾

○ TZNR 시범사업은 2018년 ‘국가 빈곤 예방 및 퇴치 전략’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2021~2022년 파리 10구 등 3개 선도 지역 실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기관, 시민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 현재 사회연대부 산하 사회결집총국(DGCS)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20)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4). Rapport annuel 2024 du CSQ.

21)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6.2). Rapport annuel 2025 du CSQ.

22)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시범사업은 2017년 시범 도입 후 2025년 6월 기준 8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 자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장기 실업 해소를 목표로 함.(자료: 프랑스 노동부. (2026.2). Territoires zéro chômeur de longue durée : Les indicateurs clés.)

23) 프랑스 감사원. (2025.10). Audit-Flash: La mise en place de l'expérimentation « Territoires zéro non-recours ».

- 2022년 「지방행정의 차등화·분권화·탈집중화 및 간소화법(3DS법)」²⁴⁾ 제133조와 2023년 시행령²⁵⁾을 통해 TZNR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특히 2025년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행규칙²⁶⁾이 확립됨에 따라, 기관 간 데이터 교차 조회 및 과학적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구체화 됨.

2. 사업 시행 현황 및 운영 방식

- 2023년 공모를 통해 그랑파리광역권(Méropole du Grand Paris)의 2개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39개 프로젝트(기초단체 20개, 중간 단위인 데파르트망 7개, 기초단체 연합체 12개)를 최종 선정함. 선정 지역은 2027년까지 총 1,800만 유로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최소 20%를 분담함.²⁷⁾
- 2025년 10월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착수 이후 2025년 기준 예산 집행률 88%를 기록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 중임.
- 각 선정 지역은 수혜자 특성과 지리적·사회적 여건 및 행정 생태계를 반영하여 TZN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데이터 기반의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다각적인 실천 과제를 통해 복지 권리 수급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행정 모델을 실험하고 있음.



24) Loi n° 2022-217 du 21 février 2022 relative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25) Décret n° 2023-602 du 13 juillet 2023 relatif à la mise en oeuvre d'une expérimentation territoriale visant à réduire le non-recours aux droits sociaux.
 26) Arrêté du 12 mai 2025 portant création d'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ayant pour finalité la réalisation d'une évaluation de l'expérimentation territoriale visant à réduire le non-recours aux droits sociaux
 27) 프랑스 사회연대부. (2025.10.31). Accès aux droits : les « Territoires zéro non-recours ».

TZNR 시범사업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및 사례

구분	주요 이행 사례
서비스 전달체계 간소화	· 현장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복지 상담 교육 실시 · 시청·복지센터 내 상시 거점 상담 창구 운영 · 행정 조력자 및 변호사 연계 '360도 종합 권리 진단'(파리)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 시장·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 상담소' 및 홍보 부스 운영 · 행정 데이터(주거급여, 근로장려금 등) 분석을 통한 미수급 의심 가구 식별 · 집배원 및 민간 협력 기관의 가구별 방문 및 신청 과정 지원
실무 거버넌스 혁신	· 보건·주거 등 주제별 협력기관 간 조정 회의 및 실무 협의체 활성화 · 미수급 경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지역별 미수급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사각지대 진단 및 지원 수요 조사 실시
정보 접근성 및 보안 강화	· 맞춤형 복지 가이드북, 뉴스레터 및 영상 콘텐츠 배포 · 기관과 수급자가 공동 활용하는 '개인별 전자 서류함' 구축(그리니 지역)

자료: 프랑스 감사원. (2025.10). Audit-Flash: La mise en place de l'expérimentation « Territoires zéro non-recours »

- 지역별 TZNR 전담관을 지정하고, 2024년 1월 발족한 학습공동체(Communauté apprenante)를 통해 실무자 간의 경험 공유와 협력을 도모하며, 150여 명의 관계자 참여를 이끌어냄.²⁸⁾
- 과학위원회와 민간 전문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단순 급여 수급 건수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신뢰도 변화 및 전문가의 실무 관행 변화 등을 포괄하는 과학적 평가를 수행함. 2027년 최종 평가 보고서는 향후 프랑스 복지 행정의 선제적 체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예정임.
- 다만,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및 전용 정보 시스템의 보급 지연으로 인해 지역별 실무 관행의 격차가 발생함. 감사원은 향후 TZNR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 인프라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²⁹⁾

28) Ibid.

29) 프랑스 감사원. (2025.10). Audit-Flash: La mise en place de l'expérimentation « Territoires zéro non-recours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도시형 주거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임대 규제 관련 입법사례

[미국 애틀랜타] 단기 임대 규제 및 과세 조례

1 - AN ORDINANCE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AND TAXATION OF SHORT-TERM RENTALS

◇ 번역문

Andre Dickens, Matt Westmoreland, Jennifer N. Ide, Amir R. Farokhi, Antonio Brown, Michael Julian Bond, Joyce M. Sheperd 의원이 발의하고, 지역사회개발·휴먼서비스위원회에서 2차 대체안으로 수정되고, 애틀랜타시의회의 대체·수정된 조례안으로 애틀랜타시 내 단기임대의 규제 및 과세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애틀랜타 주민 수천 명이 필수적인 수요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단기임대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고,

애틀랜타시는 국제 컨벤션, 콘퍼런스 및 미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곳이기도 하며,

다양한 숙박 시설의 추가 제공은 도시 경제에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애틀랜타는 미국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는 제작진, 배우 및 기타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단기임대 시설을 활용하고,

단기임대 숙박객은 다른 방문객보다 지역 소규모 상점과 식당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단기임대 소유자는 애틀랜타시의 공공 안전 및 일반 복지를 위한 공동체 기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할 책임이 있고,

애틀랜타시는 주민들이 각자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정체성 및 기타 혜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에 단기임대 주거 단위가 과잉 공급되면 주거 용도에 상업적 요소가 증가하고, 애틀랜타시에는 여가 목적 외에도 의료 종사자의 임시 체류, 의료 목적 체류, 가족 체류, 자가 격리, 원격 근무자 등 다양한 용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으로 주택 공유가 존재해 왔으며,

부동산을 단기임대로 이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해당하고, 단기임대 주거 단위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애틀랜타시는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애틀랜타시가 수립하는 규제 체계는 애틀랜타시 내 단기임대 운영을 규율하는 것이나, 기존의 사적 계약, 임대차 계약 또는 콘도협회 규칙과 같은 약정이 특정 부동산의 단기임대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대체하지 않고,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연방법이나 애틀랜타시 조례집의 요건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대체하거나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애틀랜타 구역 조례」, 「애틀랜타 주택 조례」, 「애틀랜타 건축 조례」 및 「애틀랜타시 조례」 제30장 제3절에 규정된 조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은 운영하려는 사업 유형이 해당 사업이 수행될 장소에서 구역 조례상 허가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 조례집

제20부 토지 개발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1001조 약칭

본 장은 “애틀랜타시 단기임대 조례”라 한다.

제20-1002조 의도 및 목적

본 장의 목적은 개인과 지역 사회 전체의 공중 보건, 안전 및 일반 복지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단기임대 주거 단위 이용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도시 지역 사회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적절하게 맞춤화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제20-1003조 정의 및 일반 조항

“단기임대”란 숙박 시설로서, 임대료를 받고 주거 단위를 연속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숙박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임대 대리인”이란 단기임대 허가 신청서에 단기임대의 소유자 또는 장기 임차인이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당 대리인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연락에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임대 투숙객”이란 숙박을 목적으로 주거 단위를 유료로 이용하는 투숙객, 관광객, 임차인, 휴가객 또는 기타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용 기간은 연속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기임대 소유자”란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를 말한다.

“단기임대 허가”란 도시계획국에서 단기임대 주거 단위 소유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허가로서, 해당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정한 단기임대 주거 단위 운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0-1004조 단기임대 허가

- (a)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본 장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 허가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제20-1003조에 정의된 단기임대 주거 단위로서 주거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대여 또는 유상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b) 허가 소지자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른 운영권을 임대,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어떠한 합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 (c)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발급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d) 단기임대 소유자 또는 단기임대의 장기 임차인은 추가 요구 사항, 수수료, 면허, 허가, 구역 규제 또는 관련 제한 없이 자신의 주 거주지와 추가 주거 단위 하나에 대해 단기임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연방법이나 애틀랜타시 조례집의 요건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대체하거나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애틀랜타 구역 조례」, 「애틀랜타 주택 조례」, 「애틀랜타 건축 조례」 및 「애틀랜타시 조례」 제30장 제3절에 규정된 조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은 운영하려는 사업 유형이 해당 사업이 수행될 장소에서 구역 조례상 허가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20-1005조 단기임대 허가 신청

(a) 단기임대 허가 신청자는 매년 기획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단기임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 150달러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단기임대로 사용될 단위의 주소
- (2) 단기임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해당 정보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정보로 간주된다.
- (3) 단기임대 대리인이 본 장을 검토하고 그 요구 사항을 이해했음을 인정하는 서명
- (4) 건물에 할당된 주차 공간의 수와 위치
- (5) 단기임대 대리인이 단기임대 이용자의 건물 사용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인접 부동산 소유자의 평온한 재산 사용 및 향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동의
- (6) 본 장에 따라 단기임대 대리인이 단기임대 허가 신청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b) 본 조에 설명된 신청서 제출 시, 단기임대 허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단기임대 주거 단위에 게시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규칙
 - a. 「시 소음 조례」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소음이나 소리를 허용하거나 발생시키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내용 각 단위에는 소음 측정 장치를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 b. 단기임대 주거 단위의 최대 수용 인원은 침실당 성인 2명으로 제한됨을 인정하는 내용 및 가능한 경우 현장 주차 공간의 위치와 수
 - c. 본 장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단기임대 주거 단위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시가 부과한 벌금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내용
- (2) 단기임대 허가 신청자가 단기임대 허가를 취득하려는 의사를 미국 등기 우편을 통해 각 인접 부동산에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a. 해당 통지서에는 단기임대용으로 사용될 주거 단위의 주소와 단기임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b. 해당 통지는 신청자가 단기임대 운영을 신청하는 부동산에 인접한 각 부동산에 전달되어야 한다.
 - c. 해당 통지서는 인접 부동산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신청인은 해당 통지서에 인접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의 구체적인 성명을

명시하고 포함할 필요가 없다.

- (c) 임대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단기임대 대리인은 10영업일 이내에 애틀랜타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1006조 단기임대 대리인

- (a) 단기임대 소유자는 단기임대 허가 신청서에 단기임대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기임대 소유자는 단기임대 대리인 역할도 겸할 수 있다.

- (b) 단기임대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단기임대 주거 단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처리
- (2) 단기임대 주거 단위 내 보기 쉬운 장소에 본인의 성명,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 게시
- (3) 건물 사용 또는 점유와 관련된 위반 통지서의 송달 수령
- (4) 단기임대 주거 단위의 본 장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 (5) 각 온라인 매물 정보에 단기임대 허가 번호 기재

제20-1007조 신청 승인 또는 거부

신청서 검토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본 장 또는 단기임대 운영과 관련된 연방 또는 주법, 지방 조례의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안된 단기임대 운영을 통해 지방, 주 또는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되어야 한다.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 취소, 정지 및/또는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제20-1008조 단기 규제 절차

- (a) 외부 간판은 허용되지 않지만,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단기임대 주거 단위 허가증 사본을 숙소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i) 단기임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ii) 단기임대 주거 단위 허가 번호
 - (iii) 해당 단위의 최대 수용 인원
 - (iv) 해당 단위에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차량 대수

- (b) 본 장의 의도와 목적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는 단기임대 주거 단위의 소유자와 대리인에게 임대 투숙객의 소란 행위 또는 단기임대 주거 단위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조례 위반이나 기타 법률 위반으로 위반통지서가 발부된 모든 사례를 통지하여야 한다.

- (c) 경찰서는 단기임대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거나 단기임대 주거 단위와 관련된 모든 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임대 대리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세 차례 위반 사항이 누적된 경우, 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류 중인 모든 허가를 취소하고 12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신청을 거부한다. 동일한 허가에 등록된 추가 부동산 중 12개월 이내에 3건의 연속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허가는 유효하며, 단기임대 대리인은 계속해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기임대 대리인은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d)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된다.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 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매일이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 (e) 단기임대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한 시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사유를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최종 결정은 최고운영책임자가 내린다. 최고운영책임자의 결정은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에 사법심사 청구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최고운영책임자는 본 조항의 시행을 규율하는 행정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모든 이의제기를 규율하는 절차 및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한 절차와 과정은 적법 절차에 관한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f) 단기임대 허가 소지자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애틀랜타 내에서 단기임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i)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단기임대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전화 회선 및/또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것
- (ii) 단기임대 대리인을 대상으로 해당 조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협조할 것

(iii) 조례 시행 첫해에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시행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

(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가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시의 조례, 주 또는 연방법의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조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시 검사관, 부보안관 또는 기타 공무원이 공적 불법방해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방해 제거를 위해 법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 기획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시민들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질문이나 불만을 제출할 수 있는 공공 접수 포털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1010조 세금

단기임대는 해당 주 및 지방세의 적용을 받으며, 주법 및 시 조례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단기임대는 「조지아주 주식 법전」 제48-13-51(a)(5)조 및 제 48-13-51(b)(7)(a)조에 따라 허용된 단기임대 제공 요금의 8%에 해당하는 호텔·모텔세가 적용된다.

제2조 본 조례에 반영된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와 상충되는 모든 조례 또는 그 일부는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본 조례의 조항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례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능은 본 조례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번역문

토론토시 조례 제547장 단기임대 허가 및 등록

제1절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아래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주거 단위"란 한 가구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며 음식 준비 및 위생 시설이 해당 단위 거주자 전용으로 제공되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말하며, 본 장의 목적상 부속 주택, 골목길 주택, 정원 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숙박 시설을 포함한다.

"전체 주거 단위 임대"란 임차인이 주거 단위 전체 또는 주거 단위 내의 모든 침실과 거실을 사용하는 단기임대이다.

"국장"이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인"이란 자연인을 말한다.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란 토론토 시립 허가 및 기준국 및 그 직원들을 말한다.

"운영자"란 단기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부분 주거 단위 임대"란 임차인이 주거 단위의 일부를 사용하는 단기임대를 말한다.

"사람"이란 문맥에 따라 개인,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주 거주지"란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거 단위를 말한다. 명확히 하자면, 운영자의 주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예약"이란 단기임대 운영자와 개인 간에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단기임대 숙소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즉, 예약을 말한다.

"심사 기준"이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공표한 것으로서, 본 장에 따른 모든 등록의 발급 및 갱신에 적용되는 지침과 기준을 수립할 권한에 따라 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단기임대"란

A. B&B를 포함한 주거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연속 28일 미만의 임대 기간 동안

유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 B. 해당 정의에는 호텔, 모텔 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거나 비영리 교육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는 주거 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임대 회사"란

- A. 인터넷을 통해 단기임대 예약을 지원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단기임대 예약을 하거나 완료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그로 인해, 또는 그와 연관되어 대금, 보상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을 받는 사람
- (2) 해당 단기임대 예약이 이루어지거나 완료된 숙박일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접근 또는 보유하는 사람

- B. 해당 정의는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가족의 주 거주자인 단기임대 숙소의 예약을 지원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해당 정의에서 "사람"은 단기임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여러 사람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사업 전체를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조 회사 허가 및 운영자 등록 요건

- A. 누구든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단기임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 B. 누구든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단기임대 운영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단기임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3조 광고 요건 및 운영자 인증

- 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단기임대를 광고하거나, 광고 또는 임대를 지원하거나, 단기임대를 중개하여서는 안 된다.

- (1) 해당 운영자가 본 장에 따라 등록되어 있을 것.
- (2) 해당 운영자가 본 장에 따른 등록에 기재된 성명, 주소 및 등록번호로 해당 자와 계정을 개설하고 유지할 것.
- (3) 단기임대와 관련된 모든 광고의 메인 페이지에 본 장에 따라 운영자 등록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될 것.

- B. A항의 제한 없이, 단기임대를 광고하거나, 광고 또는 임대를 지원 하거나, 단기임대를 중개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운영자가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 확인은 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관리하는 단기임대 운영자 등록부를 참조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C. 단기임대 회사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재된 호텔 또는 모텔이 아닌 한, 자사 플랫폼에서 호텔 또는 모텔 숙박 시설을 광고하거나, 광고 또는 임대를 지원하거나, 임대를 중개하여서는 안 된다.

- D. A, B, C항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를 삭제하여야 한다.

- E. 어떤 사람이 이 조항 또는 D항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광고를 삭제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해당 단기임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향후 예약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단기임대 관련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록번호

단기임대와 관련된 송장, 계약서, 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발행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문서에 운영자 등록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모든 회사 및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조항

- A. 본 장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자는 인종, 혈통, 출신지, 피부색, 민족, 시민권,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나이,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사업 수행에 있어 일반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B. 본 장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자는 장애인이 보조 동물을 동반한 경우, 보조 동물의 존재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2) 해당 허가 및 등록 관련 장소, 건물, 차량 또는 물건에 해당 사람과 보조 동물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
- (3) 사람과 보조 동물이 그러한 장소, 건물, 차량 또는 물건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C. 위협 또는 보복

- (1) 이 조항의 목적상, "위협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고용 또는 기타 사업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하려는 행위
 - (b)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는 의도를 갖는 행위.
- (2)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본 장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토론토 내 사업체에 허가를 부여하고 이를 규제·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다른 사람에 대해 위협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허가 및 등록

제1조 일반 발급 규정

A. 토론토 허가심판소, 국장 또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결정이나 진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모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고 본 장에 규정된 실물 허가증, 등록번호 또는 기타 허가 또는 등록 증빙 서류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B. 어떠한 사람도 허가 또는 등록의 존속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허가 또는 등록의 가치는 항상 시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C.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 또는 등록은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D.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허가증에 기재된 성명 이외의 다른 성명으로 광고, 홍보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E.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해당 주소 또는 주거 단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등록에 명시된 주소 또는 주거 단위 이외의 다른 주소 또는 주거 단위에서 광고, 홍보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2조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 및 갱신

A.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 또는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최초 발급일의 기념일에 갱신된다.

B.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 또는 등록을 소지한 자가 A항에 명시된 날짜까지 허가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는 다른 모든 수수료와 별도로 연체 갱신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 또는 등록을 소지한 자가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또는 등록은 취소되며, 해당인은 본 장에 따라 새로운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고 모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D. 유보

제3조 정보 변경 또는 심사 기준 위반 사항 보고 요건

A. 허가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허가, 등록 또는 갱신 신청의 일환으로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6일 이내에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B. 허가 소지자 또는 등록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

원이나 이사,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허가 또는 등록 기간 중 심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인은 즉시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위반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알려야 한다.

C. B항에 언급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또는 등록이 정지될 수 있다.

제4조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절차

A.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신청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는 승인된 양식을 작성하고, 국장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해당 수수료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단기입대 사업이 여러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허가는 신청인에게만 발급될 수 있으나, 해당 사람들은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서로의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C.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허가 또는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547장 제2절 제12조 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 발급 또는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한다.

D. C항의 (1)에 따라 발송된 통지에는 신청인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토론토 허가심판소에서 신청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청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D항에 따라 심리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심리를 위해 즉시 토론토 허가심판소로 회부되어야 한다.

F. 신청인이 허가 갱신을 신청하고 해당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해당 허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

(2) 본 조에 따른 심리 요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심리가 요청된 경우 토론토 허가심판소가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제5조 토론토 허가심판소에 허가 관련 사안 회부

토론토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언제든지 본 장에 따라 허가가 거부, 정지, 취소되거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심리를 위해 토론토 허가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조 토론토 허가심판소 심리 및 권한

토론토 허가심판소는 제545장(허가)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제7조 기술적 또는 행정적 오류로 인한 허가 취소

국장은 기술적 오류나 행정적 오류로 인해 발급된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절차

A.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신청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는 승인된 양식을 작성하고, 국장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해당 수수료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등록 또는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547장 제2절 제12조 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등록의 발급 또는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발급하거나 갱신한다.

C. B항의 (1)에 따라 발송된 통지에는 신청인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D.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C항에 따라 답변을 접수하면 해당 답변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운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E. 신청인이 등록 갱신을 신청하고 해당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해당 등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1)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
- (2) 본 조에 따른 답변 제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답변이 제출된 경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제9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등록 취소

- A. 운영자가 제547장 제2절 제12조 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등록 자격이 없거나 없어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운영자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B. A항에 따라 발송된 통지서에는 운영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C.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B항에 따른 답변을 접수하는 경우, 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해당 답변을 검토하고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의 항소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D. 운영자가 등록 갱신을 신청하고 해당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해당 등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1)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
- (2) 본 조에 따른 답변 제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답변이 제출된 경우 국장이 해당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E. 유보

제10조 거부 및 취소 절차의 서면 작성

- A. 제547장 제2절 제8조 및 제547장 제2절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답변, 수행되는 모든 검토 또는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B. A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구두 또는 전자 심리를 요청하고 국장이 상황에 비추어 심리를 개최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심리 절차를 수립하고 등록 승인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심리관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적 오류로 인한 등록 취소

- A. 국장은 기술적 오류나 행정적 오류로 인해 발급 또는 갱신된 등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B. 제547장 제2절 제12조의 D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등록 취소는 운영자가 언제든지 재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 허가 또는 등록 거부 사유 및 행정 기준

- A. 허가 또는 등록의 소지자 또는 신청인, 또는 그 갱신 신청인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등록 또는 갱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 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이 법률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본 장, 구역 조례 또는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3) 신청인은 법인이며, 그 행위 또는 그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업이 법률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4) 허가가 필요한 건물, 광고 또는 플랫폼이 본 장, 구역 조례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5) 신청인의 행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다른 공공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이며,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거나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 허가 또는 허가 갱신 신청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A항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조합의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C. A항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등록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신청인은 등록을 취득할 자격이 없으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등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D. A항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인이 등록을 신청하거나 보유할 자격이 없으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1) 해당인이 등록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 (2) 해당인의 등록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경우
- (3) 등록을 신청하는 해당 주거 단위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단, 해당 주거 단위가 그 이후로 매각되었음을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즉각적인 위험 발생 시 허가 또는 등록 정지 권한

A. 국장은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된 활동의 지속이 사람이나 재산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붙여 심리 없이 해당 허가 또는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국장은 허가 또는 등록을 정지하기 전에 허가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정지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정지 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단기임대 회사

제1조 허가 신청 및 갱신 요건

A. 단기임대 회사 허가 또는 그 갱신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모든 해당 수수료를 제547장 제2절 제4조에 따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단기임대 회사 허가 신청서는 국장이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온타리오 내 등록 사업장 주소
- (2)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모든 연락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3) 운영자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단기임대 운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단기임대 광고를 제거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 (4) 문제 운영자 처리 및 불만 대응에 관한 회사 절차의 세부 사항
- (5) 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또는 문서

C. 단기임대 회사 허가 신청인은 허가 발급 전에 시와 운영자 및 투숙객 정보의 사용, 보관 및 공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조건은 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조 운영자의 패스스루 등록 동의

본 장에 따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등록 신청을 하는 단기임대 운영자의 절차를 지원 하는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본 장의 시행 및 제758장(과세, 시 숙박세)의 시행 및 집행을 목적으로 시가 운영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는 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3조 회사의 기록 보관 및 제출

A.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자사 플랫폼에 등록 또는 광고된 단기임대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임대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에 거래가 완료된다. 보관해야 할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해당 운영자 등록증에 기재된 운영자의 성명, 주소 및 등록번호

- (2) 단기임대가 임대된 일수
- (3) 단기임대에 대해 부과된 1박당 요금 및 총 요금
- (4) 임대가 전체 주거 단위 임대인지 부분 주거 단위 임대인지 여부
- (5) 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 B.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제547장 제1절 제3조에 따라 플랫폼에서 삭제한 단기임대 목록 또는 광고의 수를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C.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본 조항에 언급된 기록을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국장이 정하는 형식과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법 집행 기관 계정의 생성 및 사용

- A.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요청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운영자 및 투숙객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며, 이는 본 장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 B. 어떠한 단기임대 회사도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본 장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설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중재 조항 금지

- A. 어떠한 단기임대 회사도 해당 회사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기임대를 광고, 지원 또는 중개하는 운영자나 투숙객을 포함한 개인에게 강제 중재 조항을 부과하거나, 토론토에서 해당 회사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타리오주 이외의 다른 관할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B. 단기임대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A항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제6조 이의 제기 절차 공표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소음, 범죄 행위 및 단기임대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단기임대 조례 관련 안내

모든 단기임대 회사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발행하는 본 장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모든 공지 사항을 해당 회사에 단기임대 속소를 등록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운영자에게 국장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4절
단기임대 운영자**

등록 자격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등록을 신청하거나 보유할 자격이 없으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은 등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 A.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 아닌 경우
- B. 본 장에 따른 다른 등록을 보유한 경우
- C. 제575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인이 운영하는 다중 임차인 주택 운영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다중 임차인 주택과 관련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D. 다른 운영자가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 단위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단, 신청인이 해당 주거 단위에 대한 등록을 가장 오랜 기간 연속하여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 등록 신청 및 갱신 요건

- A. 운영자 등록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해당 수수료를 제547장 제2절 제4조에 따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B. 운영자 등록 신청서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운영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2) 운영자의 단기임대 주소

- (3) 부동산의 어떤 부분이 단기임대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 (4) 단기임대가 위치한 건물의 유형에 대한 설명
- (5) 임대 기간 동안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6) 단기임대가 운영자의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 표준에 부합하는 정부 발행 신분증
- (6.1)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기임대가 운영자의 주 거주지임을 입증하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서류를 최소 두 개 제출하여야 한다.
- (7)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또는 문서

- C. 운영자 등록 갱신 신청서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승인한 양식을 따라야 하며, 신청인은 전년도에 해당 숙박 시설이 단기임대로 사용된 일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D.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 등록 또는 갱신 신청인은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인터뷰에 참석하여,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이 신청인의 운영자 등록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체 주거 단위 임대 및 부분 주거 단위 임대

- A. 등록 또는 갱신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전체 주거 단위 임대 또는 부분 주거 단위 임대를 운영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B.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등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등록은 전체 기간 동안 전체 주거 단위 임대 또는 부분 주거 단위 임대 중 하나로 한정된다.
- C. 부분 주거 단위 임대 사업 등록을 보유한 운영자는 전체 주거 단위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 D. 전체 주거 단위 임대 운영 등록을 보유한 운영자는 전체 주거 단위 임대 또는 부분 주거 단위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80박을 초과하여 숙소를 임대할 수 없다.

제2조 주 거주지 요건

- A. 본 장의 목적상, 운영자는 언제든지 하나의 주 거주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B. 운영자는 해당 시점에 자신의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을 단기임대용으로 임대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 C. 모든 운영자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자가 단기임대용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운영자의 주 거주지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자 등록번호 발급 및 게시

- A. 본 장에 따른 모든 등록에는 고유 번호가 발급된다.
- B.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게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단기임대 광고에 해당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본 장에 따라 발급한 운영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투숙객 대상 비상 정보 제공

- A. 모든 운영자는 단기임대 숙소에 투숙하는 모든 투숙객에게 투숙 기간 동안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비상 연락처 정보와 911 긴급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모든 단기임대 운영자는 해당 운영자가 운영하는 단기임대 숙소에 투숙하는 모든 투숙객에게 숙소가 위치한 건물의 모든 출구가 표시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사본을 투숙객의 임대 기간 동안 단기임대 숙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자의 기록 보관

- A. 모든 운영자는 해당 운영자의 단기임대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에 거래가 완료된다. 보관해야 할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단기임대가 임대된 일수
 - (2) 각 임대에 대해 청구되는 1박당 요금 및 총 요금
 - (3) 임대가 전체 주거 단위 임대인지 부분 주거 단위 임대인지 여부

(4) 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B. 모든 운영자는 A항에 언급된 정보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점검, 위반행위 및 지침

제1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감사 및 조사 권한

A. 본 장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장은 단기임대 회사 또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부 및 기록, 그리고 해당 회사의 장부 또는 기록에 있거나 있어야 할 정보와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계정, 영수증, 서신, 팩스, 전자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감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B. 단기임대 회사 및 운영자는 국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모든 감사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국장의 감사 또는 조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것
- (2)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거나, 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서면, 선서 또는 법정 선언의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
- (3)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국장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수행되는 건물이나 장소 또는 시청 사무실에 출석하는 것
- (4) 본 장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부, 서신, 계정, 송장, 재무제표, 전자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선서하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

제2조 시립 허가 및 기준국의 검사 권한

A. 시립 허가 및 기준국 또는 국장이 권한을 위임한 자는 합리적인 시간대에 그리고 「2006년 토론토시법」의 관련 요건에 따라, 본 장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B. A항에 따른 검사 중, 시립 허가 및 기준국 또는 국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1) 단기임대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가 검사에 참석하고 검사에 관련될 수 있는 문서나 물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2) 단기임대 회사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에 회사 대표가 참석하고 검사에 관련될 수 있는 문서나 물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3) 사본이나 발췌본을 만들기 위해 검사와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반출하는 것
- (4) 검사의 목적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시험, 샘플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

C. A항에 따른 검사 동안 운영자 또는 단기임대 회사의 대표자는 시립 허가 및 기준국 또는 국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도 해당 검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위반행위

A. 본 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다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법인이 본 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동의하거나, 묵인한 모든 이사 또는 임원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본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처벌 외에도, 본 장에 따라 위반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특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법원이 해당인이 본 장을 위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거하거나 줄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액수이다.

D. 본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처벌 외에도, 본 장에 따라 위반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매일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4조 해석 지침

A. 국장은 재량에 따라 본 장의 집행 또는 적용을 포함하여 본 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해석 공고 또는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B. 국장은 본 장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허가 또는 등록의 발급, 갱신 또는 자격 부여에 적용되는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C.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공고 또는 지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 규정

- A. 국장은 본 장에 규정된 권한이나 기능을 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 B. 본 장에 관한 모든 연락은 시립 허가 및 기준국과 신청인, 허가 소지자 또는 등록자 간에, 본 장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 가장 최근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어야 한다. 단, 국장이 다른 방식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C. B항에 따라 발송된 모든 이메일은 본 장의 목적상 발송된 날에 수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 D. 단기임대 회사 또는 운영자가 유지해야 하거나 본 장에 따라 시립 허가 및 기준국에서 감사, 조사 또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기록 및 정보는 제758장(과세, 시 숙박세)의 관리 및 집행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호주 프랭크스턴] 단기 임대 숙박에 관한 조례

- SHORT STAY RENTAL ACCOMMODATION LOCAL LAW 2020

◇ 번역문

2020년 단기임대 숙박시설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1.1 제목

본 조례는 프랭크스턴 시의회의 단기임대 숙박시설에 관한 조례이다.

1.2 목적

본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프랭크스턴 시의회 관할구역 내 단기임대 숙박시설의 사용을 규제하고 통제한다.
- (b) 해당 숙박시설의 관리 및 외관 상태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보장한다.
- (c) 해당 숙박시설이 이웃의 평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최소화한다.
- (d) 등록 의무를 도입한다.

1.3 수권 규정

본 조례는 「1989년 지방정부법」 제111조에 따라 제정되었다.

1.4 시작일

본 조례는 빅토리아 주정부 관보에 본 조례의 제정 공고가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5 종료일

이 조례는 시행 10주년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1.6 본 조례의 적용

본 조례는 시 관할구역 전체에 적용되며 효력을 갖는다.

1.7 정의

이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단어	정의
법률	「1989년 지방정부법」을 말한다.
수권 담당관	법률 제224조에 따라 수권 담당관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의회	프랭크스턴 시의회를 말한다.
위반행위법	「2006년 위반행위법」을 말한다.
중대한 변경	해당 부동산의 등록 신청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말한다.
자동차	「1986년 도로안전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관할구역	시의회 관할구역을 말한다.
준수명령 통지	제4장 제2조에 따라 송달된 통지를 의미한다.
거주자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 예약 양식 또는 예약 정보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 - 부동산에 숙박하는 사람 - 예약 대금을 지급한 사람
온라인	시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별점	「1991년 양형법」에 정의한 바와 같다.
부동산	시의회 기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기임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관리자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및/또는 유지하도록 고용한 사람을 말하며, 대리인도 포함한다.
등록된 단기임대 숙박시설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단기임대 숙박시설을 말한다.
등록	본 조례에 따라, 그리고 본 조례의 목적상 이루어지는 등록을 말한다.
등록 수수료	시의회가 결의를 통해 수시로 정하는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수거용기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정원 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용기를 말한다.
단기임대 숙박시설	부동산 소유자가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에서 연속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방문객	거주자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등록

2.1 등록 의무

2.1.1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을 단기임대 숙박 시설로 광고,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a) 해당 부동산이 현재 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 (b) 다음에 따라 사용될 것
 - (i) 등록 조건
 - (ii) 본 조례의 조항.

2.1.2 등록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등록 신청

단기임대 숙박시설 등록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서면 및/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
- (b) 단기임대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작성할 것
- (c) 시의회 신청서에 명시되고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할 것
- (d) 등록 수수료와 함께 시의회에 전달하거나 제출할 것

2.3 신청 세부 정보

본 장의 제2조에 언급된 세부 정보는 신청서가 시의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접수되기 전에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허위이거나 사기적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접수하여서는 안 된다.

2.4 신청 심사

단기임대 숙박시설 등록 신청이 제2장 제2절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시의회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자에게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2.5 등록 조건

2.5.1 등록 조건은 소유자가 항상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 (a) 본 조례를 준수할 것
- (b)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소유자는 시의회와 인접 부동산 거주자에게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해당 부동산의 지정된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

(c) 본 장의 제5조 제1항 (b)호에 언급된 지정된 사람이 본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후 2시간 이내에 답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연락처 정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시의회와 각 인접 부동산의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5.2 누구든지 등록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5.3 등록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본 조례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2.5.4 등록은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6 취소

2.6.1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a) 본 장의 제2조 (c)호에 따라 제공된 등록증 발급 근거가 된 신청 세부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b) 의회가 해당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관한 입증된 민원을 12개월 동안 최소 3건 이상 접수하고, 그러한 민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c) 입증된 민원이 즉시 취소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d)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단기임대 숙박시설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e) 거주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예: 수영장 울타리가 부적절하거나 없는 경우, 차고를 불법적으로 건물로 개조한 경우 등).

2.6.2 본 장의 제2조 제1항 (a)호는 변경 사항이 단순히 지정된 부동산 관리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의 세부 사항이 시의회에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3 위원회는 취소된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지불한 등록 수수료의 어떤 부분도 환불할 의무가 없다.

2.7 항소권

2.7.1 단기임대 숙박시설 등록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7.2 시의회는 검토 요청을 심의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며, 지역사회개발국장, 거버넌스·정보관리자, 지역사회안전관리자가 포함될 수 있다.

2.7.3 소유자는 검토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서면 및/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토 요청 후 14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정한 더 긴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의견 제출 없이 검토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7.4 위원회는 검토 요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2.7.5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적인 내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장 관리 기준

3.1 소유자는 본 조례를 위반하여 등록된 단기임대 숙박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2 소유자는 각 인접 부동산의 거주자에게 제2장 제5절 제1조의 (b)에 요구되는 지정된 사람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소유자는 본 조례를 모든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게시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웹사이트 또는 단기임대 숙박시설 홍보에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조례 제3장의 조항을 임대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3.4 소유자 및 거주자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 인근 거주자의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및 향유를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5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소란스럽거나 공격적인 행위

(b) 고함을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언쟁을 하는 행위

3.6 모든 거주자 및 방문객 차량을 위해 도로변이 아닌 곳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거주자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7 텐트, 카라반, 캠핑카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한 추가 숙박은 현장에 허용되지 않는다.

3.8 소유자와 거주자는 수영장, 스파, 야외 데크 및 발코니를 포함한 야외 공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 소유자는 거주자에게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남겨둔 초과 폐기물은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

3.10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지정된 수거일 전후로 하루 이상 수거용기를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집행

4.1 위반 행위

4.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벌점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 위반 행위의 경우 법원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후에도 그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마다 벌점 2점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 (a) 본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 (b) 준수명령 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c)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단기임대 숙박시설에 대한 임대 예약을 수락하는 경우
 - (d)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해당 조례를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 4.1.2 누구든지 이 조례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괴롭힘 또는 악의적 목적의 민원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 4.1.3 누구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에 해당 단기임대 숙박시설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 업무시간 외에 본 조례 위반 혐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 4.1.4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4.2 준수명령 통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권 담당관은 다음의 방식으로 준수명령 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 (a) 일반 우편
- (b)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있는 16세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 (c) 이메일
- (d) 해당 부동산의 우편함에 통지서를 넣어 두는 방법
- (e) 해당 부동산의 정문 안쪽이나 아래쪽에 안내문을 끼워 넣는 방법

4.3 지침 준수

누구든지 수권 담당관이나 빅토리아주 경찰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4.4 위반 통지

- 4.4.1 수권 담당관이 어떤 사람이 해당 조례에 따라 위반 통지가 발부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권 담당관은 그 사람에게 위반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 4.4.2 위반 통지에 대한 벌금은 본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고정 벌금이다.
- 4.4.3 위반 통지는 「2006년 위반행위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별표 1] 위반 통지서 발부를 위한 위반행위별 벌금

위반	벌칙
제2장 제1조 제1항	벌점 5점
제2장 제3조 제1항	벌점 5점
제2장 제5조 제3항	벌점 5점
제3장 제1조 제1항	벌점 5점
제3장 제1조 제2항	벌점 5점
제3장 제1조 제3항	벌점 5점
제3장 제1조 제5항	벌점 5점
제3장 제1조 제8항	벌점 5점
제3장 제2조	벌점 5점
제4장 제1조 제1항	벌점 5점
제4장 제1조 제2항	벌점 5점
제4장 제1조 제3항	벌점 5점
제4장 제1조 제4항	벌점 5점
제4장 제3조	벌점 5점
제4장 제4조	벌점 5점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연번	질의기관	질의내용	회신일	페이지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법 제469조」 관련)	'26. 4. 7.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26. 4. 6.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또는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26. 4. 3.	
4	경상북도 울진군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26. 3. 23.	
5	경상남도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 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26. 3. 23.	

1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법 제469조」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102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회신일자 2026. 4. 7.]

◇ 질의요지

- 가.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동일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고용주(농가)에게 “이중지급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법률비용 지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이 사안에서 검토되는 양구군이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제1항에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제5항)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질의는 양구군이 이러한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양구군이 MOU를 체결하여 운영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고용주(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계절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 상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간에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민법」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69조에서는 채무의 제삼자 변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 변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0조에서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81조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장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등을 국가기관 등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채무의 대위변제나 채권의 대위행사에 대해서는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에 채무의 제3자 변제나 채권자 대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3. 10. 의견제시 21-0039 참조).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검토되는 양구군이 운영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계절관리 프로그램 등의 조문이 신설(2025. 7. 22.)되어 시행(2026. 1. 23.)되기 전, 2023년~2024년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과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체류자격에 근거하여 양구군과 필리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관리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행정비용 등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직접 중개업체에 이체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중개업체에 이체된 금액을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보는 시정명령을 함에 따라, 해당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중개업체에 지급된 부분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양구군은 해당 고용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중지급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소송 및 행정불복 절차에 필요한 법률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이하 “양구군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명을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20쪽)

양구군조례안과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고용주의 임금 이중지급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 및 행정불복 절차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의 임금 이중지급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 및 행정불복 절차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9. 의견제시 25-0235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임금 이중지급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해당 피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보조금이 없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 자체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당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를 공공재원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보조금의 본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임금 이중지급 피해를 전제로 한 손실보전 성격인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피해 관련으로 소송 및 행정불복 절차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보조금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의 범위, 비용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열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75 /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2026. 4. 6.]

◇ 질의요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구 또는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1호가목) 등과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4. 2. 29. 의견제시 24-0043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심의대상을 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의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구 또는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방심의위원회가 제2항제2호라목·사목·아목(아목 중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참여하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를 거쳐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7.>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시·도지사과 협의

3. 다른 발주청의 제19조제6항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발주청과 협의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0조,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⑩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회의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또는 사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91 / 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2026. 4. 3.]

◇ 질의요지

○ 지방회의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각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교원(각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지원(각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참조).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원·전문인력·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중 “교원 지원”의 의미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각주: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보이고, 귀 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교원을 임용하는 사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3조제5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제4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로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교원을 임용하는 사무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조례를 제정(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북교육청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교육활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중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등과 같이 그 의미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생의 소질·적성 및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체험·프로젝트·상담·진로연계 등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특성화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한 학교 중, 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공립 및 사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략)

제8조(인력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원·전문인력·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교육활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3.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3. (생략)

④·⑤ (생략)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 ⑩ (생략)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3의2. 삭제 <2013. 5. 31.>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 5. 31.>

5. 삭제 <2013. 5. 31.>

6. 삭제 <2007. 6. 28.>

7. 삭제 <2013. 5. 31.>

8. 삭제 <2013. 5. 31.>

⑥ (생략)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 ~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1. 삭제 <2013. 5. 31.>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② ~ ④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4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81 / 요청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회신일자 2026. 3. 23.]

◇ 질의요지

-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 제출을 위한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23쪽~25쪽 참조).

그렇다면,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에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제1호),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제2호), 신청자의 주주명부(제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제4호),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 받으려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제5호)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전기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기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특히,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의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허가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사무로서 자치법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은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지역여건 및 발전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라기 보다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허가사무 과정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적 참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제1호),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제2호),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제3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제4호)을 포함한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서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시 세부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등을 주요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이행 능력 심사항목 중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 수용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울진군에서 제정하려는 「풍력발전사업 주민수용성 판단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울진군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조례안은 울진군 내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군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풍황계측기 설치단계(제1호), 발전사업 허가 신청단계(제2호) 별로 주민 의견수렴 실시여부,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및 참석률, 민가로부터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민설명회, 이격거리, 주민동의율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예외사항을 두어 제3조에도 불구하고 풍황계측기 기준 반경 3km 이내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득하고, 주민이 풍력발전을 요구하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곳이나 주민참여형 지역은 제3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기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사업 허가기준 및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 체계에 따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이격거리, 주민동의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이격거리, 주민동의율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기사업 허가를 위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나 동의 확보를 요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이러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6. 13. 의견제시 25-0095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울진군 조례안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생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략)

⑥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 ③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⑤ (생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발전사업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 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재무능력

심사항목 /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일 것
-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 자기자본 : 투자확약서, 공동개발협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출자 증빙서류
 - * 타인자본 : 대출의향서 등
-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 이상일 것
-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이 합리적이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 초기개발비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말한다.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2호)

-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2. 기술능력

심사항목 / 기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 건설·운영 단계별로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3. 사업이행 능력

5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36 / 요청기관: 경상남도 / 회신일자 2026. 3. 23.]

심사항목 /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 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향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 신청자 및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사의 공급의향서(공급의향 용량 및 기간 명시)를 제출할 것

◇ **질의요지**

- 가.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나. (질의 가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교육감이 유보통합과 관련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 다. 교육감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 라. (질의 다에서 추진할 수 없다면) 교육감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각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하 “경남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유보통합을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보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한다)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교육청조례안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유보통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제4호). 그리고,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 또한,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1항).

이와 같은 유보통합 추진 지원과 관련한 경남교육청조례안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조례안의 주된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육계획의 수립 등의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과 관련한 사무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정책적 방향(목표)을 전제로 하여

교육감이 각각의 사무의 통합, 즉 유보통합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것인지의 사무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1. 6. 2. 의견제시 21-0132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보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수행하는 유아교육 사무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사무의 통합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그 성격이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유보통합 추진 지원 사무 자체가 교육감이 수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지원 사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 관련 사무와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되지 않은 점,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예산 등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점 등에서, 경남교육청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법령상 권한이 없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교육감이 유보통합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하는 구체적인 집행 사무가 아니므로, 같은 법 등의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에 지원에 관한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경우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전단), 준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유보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 실태조사나 연구를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감이 유보통합과 관련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 지원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제2항제1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돌봄의 연계·협력 사업(제2항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영유아 교육여건의 개선’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른 ‘영유아 교육여건의 개선’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표현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돌봄의 연계·협력’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에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무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9. 29. 의견제시 22-0257 참조). 그러므로, 경남교육청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이 영유아의 보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감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 중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경남교육청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영유아 돌봄”,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집”, “돌봄”과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교직원”의 표현 등을 제외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 중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을 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재정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수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관할 구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유아보육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남교육청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는 ‘재정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으로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감이 영유아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예산) 집행을 하려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 집행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주체는 국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영유아보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재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 지원)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돌봄의 연계·협력 사업
3.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공동 연수와 역량 강화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재정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생략)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 5. (생략)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둔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의원발의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 제정조례안

1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5. 29. / 발의자 : 안명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개정이유

-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2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5. 13. / 발의자 : 정경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임.

- 나. 2026년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나, 해당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용·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장치임.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보완할 자체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이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비 지원 공백, 긴급 의료공백, 지방비 부담 및 경기도 자체 보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기도 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응급·중증·분만·외상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지역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기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
- 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용 부담 완화, 응급·중증 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치·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3조).
- 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 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 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한시적 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월간 입법동향

□ 발행월 : 2026년 6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호 성
 입 법 조 사 관 유 승 규 황 대 석
 김 흥

□ 연락처 : 031-8008-7285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